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45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김승수 · 김선교 · 김대식
서지영 · 안철수 · 엄태영
박성훈 · 최은석 · 조승환
김기웅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 · 낚시 · 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고 위험성과 이용 형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입통제는 국민들의 건전한 연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한 연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고이력 · 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 위험구역 · 주의구역으로 세분화한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연안안전관리구역은 해당 지역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낚시

인 등 연안활동자의 이용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과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험예보 종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추락 위험이 높고 배수 시 유속이 급속히 증가하는 갑문
5. 연안절벽, 항포구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관리구역은 연안사고 이력·위험도 및 구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통제구역: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구역
2. 위험구역: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 요인이 많아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구역
3. 주의구역: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어, 방문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순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구역을 지정·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⑤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의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

-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생략)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u> 2. (생략) 3. <u>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u> 4. ~ 6. (생략) ③ (생략)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2. (현행과 같음) 3. <u>위험예보 종류·방법 등에 관한 사항</u>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u>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u> 1. <u>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u>	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u>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u> 2. <u>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u>

<u>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u> <u>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u> <u>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u> <u>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u> <u>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u> <u>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u> <u>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u>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u> <u>4. 추락 위험이 높고 배수 시 유속이 급속히 증가하는 갑문</u> <u>5. 연안절벽, 항포구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u> <u>6. 그 밖에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u> <u>② 관리구역은 연안사고 이력·위험도 및 구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u> <u>1. 통제구역: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구역</u> <u>2. 위험구역: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 요인이 많아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구역</u>
---	---

3. 주의구역: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어, 방문객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순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구역을 지정·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⑤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

	<u>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은 연</u> <u>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9조제</u> <u>2항제4호의 위험표지판 등 안</u> <u>전관리 시설물을 설치·관리해</u> <u>야 한다.</u>
--	--